

인천지방법원 2022. 6. 15 선고 2021가단2373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

담당변호사 김대원, 이슬, 이원배, 조은정

변 론 종 결 2022. 5. 25.

판 결 선 고 2022. 6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(C의 상속지분)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0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. 11. 11. 접수 제43227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C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, 원고는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받아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69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8. 7. 5. “C는 원고에게 28,273,341원 및 그중 9,452,385원에 대하여 2008. 4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,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,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‘이 사건 판결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C의 부(父) E은 2016. 5. 21. 사망하였고, 모(母)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9. 10. 23.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와 C, G 등 3명이 공동상속 받았는데,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. 11. 11. 접수 제432270호로 2019. 10. 23.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,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(1/3)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가 이전부터 수년간 물심양면으로 부모와 C를 부양해 왔고 앞으로도 C를 부양해야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단독 소유로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도 없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다만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

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합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, 3호증, 을 제1 내지 3, 6 내지 11, 14 내지 24,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와 C, G 등 3명이 있는데, 장남인 C는 2012. 9.경부터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장애, 오른쪽 팔다리마비(편마비),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고, G는 대전에 거주하는 관계로 자주 왕래하지 못함에 따라, 피고는 망인과 부(父) E의 차남으로서 그 근처에 살면서 2006년경부터 망인과 E이 사망할 때까지 10여년간 당뇨판정을 받고 시각장애 3등급이었던 E을 대신하여 망인과 E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이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또한, 피고는 뇌출혈로 쓰러진 장남 C에 대한 병원비 등도 부담하여 왔고,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C의 집(이 사건 각 부동산)에 같이 거주하면서 앞으로도 C를 책임지고 부양할 예정인 점,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76,557,905원인데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채무(35,000,000원)의 대출이자 등을 피고가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망인의 상속인들은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는데, 피고가 부모인 망인과 E의 부양을 주도적으로 책임져 왔고, 장남인 C에 대한 병원비 등도 부담하여 오면서 앞으로도 부양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, 다른 상속인들까지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앞서 본 특별부양의 방법과 기간, 피고가 망인과 E을 위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,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

내용, 상속재산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,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있을 뿐, C에게는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범진

별지